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8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6. 13.

다.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금명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부정적 영향의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피해자의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관 리	◦ 인권·환경기업위원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업인권환경보호법안”이라 함)은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를 지원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업인권환경보호법안에 따르면 “인권·환경실사”란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면서 자신·피지배회사 또는 공급망 내의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부정적 영향의 식별, 대책의 수

립 및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임.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의무화 법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개정안은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예방 및 피해자 구제는 관련 기업 등이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수행할 사안으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불이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존 사법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의해 해결될 필요가 있고,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은 과태료 외 자체수입이 없어 사실상 기금 재원을 정부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결여되었으며, 기금 재원-목적사업 수행 간 긴밀한 연계성 인정이 곤란하므로 별도의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임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2)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³⁾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인권환경보호법안상 이를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미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재원-용도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동 과태료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부과·징수 규모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우며, 기업인권환경보호법안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그 판단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등의 출연금 또는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할 우려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

3)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를 지원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기업의 기업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⁴⁾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하게 과태료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업인권환경보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문의처

02)6788-5152